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3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1구합28 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11. 6.
판 결 선 고	201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11. 11.자 최초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1997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28,503,200원, 1997. 12. 2.자 법인세 경정 처분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된 부분에 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489,160원, 1998. 6. 11.자 법인세 경정 처분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된 부분에 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88,548,63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3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81. 7. 1. [redacted]시 B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redacted]시 B 소재 C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서울 [redacted]구 D 소재 E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1993. 1. 1.경 [redacted] 세무서 및 [redacted]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1993. 4. 30.경 부도가 난 후에는 영업활동이 모두 정지되어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나. 피고는 1997. 7.경 및 1998. 7.경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1997. 11. 11.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1997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28,503,200원, 1997. 12. 2.자 법인세 경정 처분에 따른 1997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489,160원, 1998. 6. 11.자 법인세 경정 처분에 따른 1997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88,548,630원, 이하 '이 사건 각 주민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주민세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후술할 이 사건 제5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주민세 부과처분 또한 무효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1997년도 주민세 관련 법인세 부분

가) 이 사건 1, 4 법인세 부과처분

(1) 구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은 1993. 5. 1.경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출하면서 원고 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3

유의 [redacted]시 [redacted]구 F 대 1,169.9㎡, G 대 1,043.3㎡, H 대 28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I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각 I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일신상가 주식회사가 1994. 3. 12. F, G 부동산을 대금 4,024,000,000원에, K이 1994. 4. 13. H 부동산을 대금 507,129,340원에 각 경락받았다.

(2) [redacted]세무서장은 1995. 12.경 F, G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80. 10. 8., H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78. 11. 22.로 하여 이 사건 각 I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983,710,352원{F, G 부동산의 양도차익 574,205,384원(양도가액 4,024,000,000원 - 취득가액 2,212,825,283원 - 양도비용 1,236,969,333원) + H 부동산의 양도차익 409,504,968원(양도가액 507,129,340원 - 취득가액 47,985,965원 - 양도비용 49,638,407원)}으로 보고 1994년도분 법인세 245,927,588원, 가산세 73,778,275원 합계 319,705,863원의 부과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1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redacted]세무서장은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초순경 이 사건 각 I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1977. 1. 1.로 의제하고 이 사건 각 I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4,214,877,344원{F, G 부동산의 양도차익 3,808,923,337원(양도가액 4,024,000,000원 - 취득가액 113,198,244원 - 양도비용 101,878,419원) + H 부동산의 양도차익 405,954,007원(양도가액 507,129,340원 - 취득가액 47,985,965원 - 양도비용 53,189,368원)}으로 보고, 그에 따라 1994년도분 법인세를 1,053,719,336원, 가산세를 493,562,136원 합계 1,547,281,472원으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4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3

(4) 한편, F 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일이 1973. 5. 17., 등기접수일이 1980. 10. 8.로 되어있고, H 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일이 1973. 1. 일자불상, 등기접수일이 1978. 일자불상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2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2. 10. 13. 원고 소유의 [redacted]구 L 대 241㎡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와 M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N 대 93㎡ 외 1필지를 유천건설 주식회사에 대금 14,18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1993. 3. 1. 이 사건 L 토지의 양도가액을 13,318,900,000원{≒ 14,182,000,000원 × (원고 소유 토지의 면적 15,725㎡ / M의 토지까지 포함한 L 토지 전체 면적 16,744㎡)}, 취득가액을 988,948,614원으로 신고하였고, [redacted]세무서장은 그 무렵 위 L 토지와 그 외 기타토지(M의 토지가 아님)의 양도차익을 13,606,322,717원으로 보고 1992년도분 법인세로 3,401,580,679원, 가산세로 340,158,067원 합계 3,741,738,746원을 부과하였다.

(3) [redacted]세무서장은 1995. 4. 19. 위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2차 납세의무자인 [redacted]산업 주식회사(이하 '[redacted]산업'이라 한다)에 원고가 위 1992년도분 법인세 중 그 당시까지 체납한 1,886,720,65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redacted]산업 소유의 [redacted] [redacted]구 O 외 [redacted]필지 등을 공매처분 하겠다고 납부를 독려하였고, 이에 [redacted]산업이 1995. 7. 1. 위 체납세액 1,886,720,650원을 납부하자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L 토지의 매매계약상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매매대금 중 20억 원이 감액되자, 계산산업은 1995. 5. 26. [redacted]세무서장에게 20억 원 감액 부분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redacted]세무서장은 1995. 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3

30. L 토지와 기타토지의 양도차익을 11,728,055,192원[L 토지 양도차익 9,604,711,989원{12,182,000,000원 × (15,725/16,744) - 취득가액 988,648,614원 - 양도소득특별공제 847,271,862원(988,648,614원 × 생산자 물가상승률 85.7%)} + 기타토지 양도차익 2,123,343,203원]으로 보고 1993년도분 법인세를 2,932,013,798원, 가산세를 293,201,379원 합계 3,225,215,177원으로 경정하고, 1995. 7. 5. 계산산업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당초 14,182,000,000원에서 12,182,000,000원으로 하여 1992년도분 법인세 1,662,013,840원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하였다.

(5) [redacted]세무서장은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초순경 양도차익 중 양도소득특별공제를 L 토지 취득가액 345,942,000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하고(위 취득가액 988,948,614원은 L 토지 345,942,000원과 그 지상 건물 203,709,906원 및 구축물 438,996,708원을 합한 가격임),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당초 847,271,862원에서 296,472,294원(345,942,000원 × 85.7%)으로 산정한 후 양도차익을 12,278,854,760원으로 보고 1992년도분 법인세를 3,069,713,690원, 가산세를 364,695,113원 합계 3,434,408,803원으로 경정하고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3,225,215,177원을 공제한 209,193,6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3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위

[redacted]세무서장은 1997. 3. 초순경 원고가 1990. 12. 31. 장부상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관리해 오던 119,000,000원을 미사용하였다면서 이를 199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익금에 산입하여 1993년도분 법인세 14,303,5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3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3

2) 1998년도 주민세 관련 법인세 부분

가) [redacted]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포함한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7. 6. 27. 원고 소유의 [redacted]시 P 외 [redacted]필지 토지를, 1997. 9. 19. Q 외 5필지, 같은 시 R 외 1필지, 같은 시 S 외 3필지를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1 법인세 부과처분의 법인세 319,705,860원에 대하여 1996. 2. 29. 128,586,550원, 1997. 7. 11. 93,500,000원, 1997. 8. 30. 86,775,580원, 1997. 9. 11. 74,956,730원(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1997. 9. 11. 전액 징수되었고, 이 사건 2 법인세 부과처분의 법인세 209,193,620원과 이 사건 3 법인세 부과처분의 법인세 14,303,550원에 대하여 1997. 9. 11. 232,204,900원 및 15,876,920원(각 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같은 날 각 전액 징수되었으며, 이 사건 4 법인세 부과처분의 법인세 중 319,705,860원을 공제한 1,227,575,600원에 대하여 1997. 9. 11. 411,461,550원, 1997. 9. 30. 146,610,000원, 1997. 10. 13. 23,350,000원, 1997. 11. 29. 795,271,870원(가산금 포함)이 충당되어 1997. 11. 29. 전액 징수되었다.

다) [redacted]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redacted]세무서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위 공매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7. 11. 11.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285,03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 12. 2. 4,891,690원을 증액·경정하였고, 1998. 6. 11. 이를 다시 1,027,829,010원으로 증액·경정하고 그때까지 원고가 납부한 289,923,710원(= 285,032,020원 + 4,891,690원)을 뺀 나머지 737,905,300원(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5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각 주민세 부과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3

피고는 1997. 7.경 및 1998. 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5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1997. 11. 11.자 최초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1997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28,503,200원, 1997. 12. 2. 법인세 경정 처분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된 부분에 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489,160원, 1998. 6. 11. 법인세 경정 처분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된 부분에 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88,548,630원, 이하 '이 사건 각 주민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법인세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에 대한 소송의 진행 경위

가) 이 사건 1 내지 4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는 2008. 7. 31. 이 사건 1 내지 4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redacted]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 2008구합465), 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1897)은 2010. 8. 20.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0두11320)에서 2014. 12. 24. 파기환송되었다.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150호)에서 2015. 6. 10.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상고(대법원 2015두2574) 하였으나 2015. 10. 15. 기각되었다.

나) 이 사건 5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1) 원고는 2001. 7.경 [redacted]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5 법인세 부과처분(1997년도분 법인세 737,905,300원 부과처분)이 과세원인이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공매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redacted]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2001구30120)에 주위적으로 피고의 [redacted]구 T, [redacted]구 U 및 V 토지에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3

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3. 6. 10.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2003누11355)에 항소하자 항소심에서 2004. 11. 26.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2004두14717)에서 2006. 5. 12. 상고기각되었다.

(2) 원고는 2015. 2. 24. [redacted]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5 법인세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적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redacted]세무서장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67호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 사건 제5 법인세 부과처분의 송달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5누870).

[인정 근거] 갑 제5, 6, 7, 8호증,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redacted]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1 내지 4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가 [redacted]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5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redacted]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5 법인세 부과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3

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또한 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5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5 법인세 부과처분의 선행 근거가 된 이 사건 1 내지 4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관련 행정사건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고, 이 사건 5 법인세 부과처분의 송달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5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5 법인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류영재

판사 이석준